

부산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3187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5. 6. 접수제30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과, D이 E연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F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2억 1,68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4. 8. 29. 위 도급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공사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중 2억 1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 2. 4. D과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1063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2015. 6. 24.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은 2015. 4. 27.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7,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281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5. 4.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5. 6. 접수 제30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은 2015. 4. 27.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와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잔존 채무액을 변제하여 위 날짜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접수일	근저당권자(압류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2013. 1. 18.	G	C	105,000,000원
2013. 2. 15.	G	C	30,000,000원
2014. 4. 29.(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 부동산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C	-

마.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으로 시가 2억 18,107,14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1억 6,200만 원 상당의 부산 동래구 H건물 제2층 I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15,157,410원의 체납보험료 채무, ② G에 대하여 1억 470만 원의 대출채무, ③ J 주식회사에 대하여 8,213,000원의 대출채무, ④ 주식회사 K에 대하여 2,200,000원의 대출채무, ⑤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9,200만 원의 보증채무, ⑥ L 주식회사에 대하여 1,155만 원의 보증채무, ⑦ 주식회사 M에 대하여 5,399,000원의 채무, ⑧ N공제조합에 대한 4억 7,225만 원의 구상금채무(제공일시 2016. 7. 11., 발생일시 2015. 8. 18.), ⑨ 중부산세무서 및 동래세무서에 대한 각 1,000만 원의 조세채무(각 채무발생일시 2015. 4. 28.), ⑩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억 71,870,000원의 구상금채무(신용보증약정일 2009. 4. 24., 채무발생일시 2015. 7. 27.)를 각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신용보증기금은 2016. 1.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746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6. 12. 22. “C과 피고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된 매매계약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04,390,49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104,390,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23.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위 확정 판결 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사. 한편, 제1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카경22898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8. 27. O에게 매각되었고, 2018. 9. 3.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항변

(1) 주장내용

이 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자신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소가 2020. 6.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C와 피고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4. 27.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5. 4.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결론에 있어 이유 있다.

나. 권리보호이익의 없다는 항변

(1) 주장내용

피고는 종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판결문상의 원리금 합계 1억 14,083,519원을 변제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모두 마쳤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와 종전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C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해행위와 동일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746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액배상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신용보증기금에 위

확정 판결문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모두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부동산 목록

1. 경남 거제시 P 대 212㎡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2㎡
2. 경남 거제시 Q 임야 2,001㎡
 경남 거제시 R 임야 1,016㎡
 경남 거제시 S 전 516㎡
 경남 거제시 T 답 136㎡
 경남 거제시 U 전 1,438㎡

